## < 정 오 표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유리MKF웰스토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8.10.11

3. 주요 정정사항:

- C-P1, C-P1e, C-P2e 클래스 신설

- 클래스 명칭 변경(C-P → C-P2)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내역 반영

- 법 개정사항 반영

## [규약]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조(투자	클래스 명칭	①~② (생략)	①~② (현행 유지)
신탁의 명칭	변경 및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
및 종류)	신설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1.~6. (현행 유지)
		<u>7. Class C-P 수익증권</u> : 소득세법 제20조의3	<u>7. Class C-P2 수익증권</u>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	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신설 2013. 4.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신설 2013. 4. 1> <u>&lt;개</u>
		1>	정 2018. 10. 11>
		8.~10. (생략)	8.~10.(현행 유지)
		11. <신설>	11. Class C-P1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
		<u>12. &lt;신설&gt;</u>	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u>13. &lt;신설&gt;</u>	전용 수익증권 <신설 2018.10.11>
			12. Class C-P1e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u>온라인 (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lt;신설</u>
			<u>2018. 10. 11&gt;</u>
			13. Class C-P2e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
			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u>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u>
			<u>수익증권 &lt;신설 2018.10.11&gt;</u>
		④ (생략)	④ (현행 유지)
제10조(수익	클래스 명칭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증권의 발행	변경 및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및 예탁)	신설	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	
		1.~6. (생략)	1.~6.(현행 유지)
		<u>7.</u> Class C-P 수익증권	7. Class C-P2 수익증권 <개정 2018. 10. 11>
		8.~10. (생략)	8.~10.(현행 유지)
		11. <신설>	11. Class C-P1 <신설 2018. 10. 11>
		12. <신설>	12. Class C-P1e 수익증권 <신설 2018. 10. 11>
		13. <신설>	13. Class C-P2e 수익증권 <신설 2018. 10. 11>
		②~⑤ (생략)	②~⑤ (현행 유지)
제39조(투자	클래스 명칭	①~② (생략)	①~② (현행 유지)
신탁보수)	변경 및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보수는 당해
	신설	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
		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
		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	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
		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금액으로 한다.	한다.
		1.~6. (생략)	1.~6.(현행 유지)
		7. Class C-P 수익증권 <신설 2013. 4. 1>	7. Class C-P2 수익증권 <신설 2013. 4. 1><개
		<u>(생략)</u>	정 2018. 10. 11>
			<u>(현행 유지)</u>
		8.~10. (생략)	8.~10.(현행 유지)
		<u>11. &lt;신설&gt;</u>	<u>11. Class C-P1 수익증권 &lt;신설 2018. 10. 11&gt;</u>
		<u>12. &lt;신설&gt;</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13. <신설>	<u>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0</u>
			<u>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u>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0.15</u>
			12. Class C-P1e 수익증권 <신설 2018. 10. 11>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u>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u>
			<u>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u>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0.15</u>
			13. Class C-P2e 수익증권 <신설 2018. 10. 11>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제41조(환매	환매수수료	① (생략)	① (현행 유지)
수수료)	일괄 적용	② Class A, Class C, Class C1, Class C2, Class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

		A-e, Class C-e, Class I, Class W, Class S 수익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증권의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개정 2018.
		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	10. 11>
		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u>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u>
		1.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2. <u>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u>
		2.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u>30%</u>
		<u>30%</u>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른 "수익증권통장거래	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
		약관"(Class C-P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	관" 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차개정 2013.
		있다. <변경 2013.4.1>	4. 1><2차개정 2018. 10. 11>
제52조(수익	문구 정정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u>"수익증</u>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u>"수익증</u>
증권의 통장		권통장거래약관"(Class C-P의 경우에는 "연금	<u>권저축약관" 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u> 에 정
거래)		<u>저축계좌설정약관")</u> 에 정한 바에 따라 통장거	한 바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개
		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	정 2013. 4. 1> <u>&lt;개정 2018. 10. 11&gt;</u>
부칙	-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요약정보				
표.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정보	ž			
[1] 투자전략					
4. 운용전문	결산 갱신	-	기준일자로 업데이트		
인력					
5. 투자실적	결산 갱신	-	기준일자로 업데이트		
추이(연도별					
수익률(세전					
기준))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	연환산 표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결산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결산		
등급 분류	준편차 수	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u>이</u>		
	치 반영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	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		
		<u>준편차가 11.85% 수준이므로</u> 유리자산운용㈜	<u>차가 11.96% 수준이므로</u> 유리자산운용㈜은 실		
		은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	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		
		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등	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등급 (다소		
		급 (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클래스 신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u>Class C-P</u>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u>Class C-P2,</u>
	설에 따른	<u>가입자에 한함</u> )	<u>C-P2e 가입자에 한함</u> )
	과세 내용	<u>- &lt;신설&gt;</u>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Class C-P1, C-P1e 가입
	추가		<u>자에 한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u>
	' '		<u>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이 투</u>
			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
			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
			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
			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제1부. 모집 모	 드는 매출에 관	하 사항	<u> </u>
1. 집합투자	<b>클</b> 래스 명	- C-P 클래스	- C-P2 클래스
기구의 명칭		- <신설>	- C-P1, C-P1e, C-P2e 클래스
711-100	신설		
제2법 지하트		IL하	
<b>제2부. 집합투</b> 1. 집합투자	자기구에 관한 클래스 명칭	- C-P 클래스	- C-P2 클래스
		<u>- &lt;산설&gt;</u> - <신설>	- C-P2 <u>= 데 —</u> - C-P1, C-P1e, C-P2e 클래스
기구의 명칭	변경 및 신	<u> </u>	<u> </u>
	설		
2. 집합투자	변경에 따른	-	2018.10.11
기구의 연혁	연혁 추가		- C-P1, C-P1e, C-P2e 클래스 신설
			<u>- 클래스 명칭 변경(C-P → C-P2)</u>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내역 반영
			_ <u>- 근                                  </u>
5. 운용전문	결산 갱신	-	기준일자로 업데이트
인력			
6. 집합투자	클래스 명칭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기구의 구조	변경 및 신	<그림>	<그림>
	설	<u>- C-P 클래스</u>	<u>- C-P2 클래스</u>
	_	<u>- &lt;신설&gt;</u>	<u>- C-P1, C-P1e, C-P2e 클래스 추가</u>
		나. 종류형 구조	나. 종류형 구조
		<u>- C-P 클래스</u>	<u>- C-P2 클래스</u>
		<u>- &lt;신설&gt;</u>	<u>- C-P1, C-P1e, C-P2e 클래스</u>
8. 집합투자	법 개정사항	나. 투자제한	나. 투자제한
기구의 투자 대상	반영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니(G		-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	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
		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	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	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부터 제
		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9조제2	10호까지 및 제1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
			0 1 11

		부터 3개월까지( <u>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u>	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초
		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	<u>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u>
		<u>능한 시기까지</u> )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	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
		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
		6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	   제19조제6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
		하여야 합니다.	여야 합니다.
10. 집합투자	연환산 표준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구의 투자	 - - 편차 수치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 · · · - · · · · · · · · · · · · · ·
위험	- ' ' '   반영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 · · · · · · · · · · · · · · · · · ·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
		환산 표준편차가 11.85% 수준이므로 유리	편차가 11.96%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은
		자산운용㈜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	6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등급 (다
		은 수준인 3등급 (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	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추후 매결산시
		합니다.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	
		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	기기 년 8명을 제기 8위에 되기 위기 8위 8위 기기 위기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THOUSE   ME
11. 매입, 환	클래스 명칭	가. 매입	가. 매입
매, 전환절차	<sup>르네</sup> ㅡ ㅇㅇ   변경 및 신	(2) 종류별 가입자격	^1. 에 B   (2) 종류별 가입자격
및 기준가격	└	<u>- C-P 클래스</u>	- C-P2 클래스
적용기준		- <신설>	- C-P1, C-P1e, C-P2e 클래스
13. 보수 및	클래스 명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에 관	변경 및 신	<u>- C-P 클래스</u>	<u>- C-P2 클래스</u>
한 사항	설, 결산 갱	<u>- &lt;신설&gt;</u>	<u>- C-P1, C-P1e, C-P2e 클래스</u>
	신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 C-P 클래스</u>	<u>- C-P2 클래스</u>
		- <신설>	<u>- C-P1, C-P1e, C-P2e 클래스</u>
14. 이익 배	클래스 명칭	나. 과세	나. 과세
분 및 과세	변경 및 신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Class C-
에 관한 사항	설에 따른 과세 내용	<u>C-P 가입자에 한함)</u>	<u>P2, C-P2e 가입자에 한함)</u>
Ö	최세 네 이   추가	(생략)	(현행 유지)
		(5) <신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Class C-P1, C-P1e 가
			<u>입자에 한함)</u>
제3부. 집합투	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결산 갱신	<u>-</u>	기준일자로 업데이트
2. 연도별 설	결산 갱신	-	기준일자로 업데이트
정 및 환매	j l		
현황			

3. 집합투자	결산 갱신	-	기준일자로 업데이트		
기구의 운용					
실적					
제4부. 집합투	자기구 관련회	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	최근일자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일자로 업데이트		
업자에 관한	업데	라. 운용자산규모	최근일자로 업데이트		
사항	이트				
제5부. 기타 투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법 개정사	라. 손해배상책임	라. 손해배상책임		
권리에 관한	항 반영	③ 증권신고서 않습니다.	③ 증권신고서 않습니다.		
사항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		
		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u>발행인</u>	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u>법 시행령</u>		
		<u>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u>	제135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u>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u> )			

##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표.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정보	ž			
[1] 투자전략					
4. 운용전문	결산 갱신	-	기준일자로 업데이트		
인력					
5. 투자실적	결산 갱신	-	기준일자로 업데이트		
추이(연도별					
수익률(세전					
기준))					
[2] 주요 투자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	연환산 표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결산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결산		
등급 분류	준편차 수	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u>이</u>		
	치 반영	<u>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u>	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		
		<u>준편차가 11.85% 수준이므로</u> 유리자산운용㈜	<u>차가 11.96% 수준이므로</u> 유리자산운용㈜은 실		
		은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	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		
		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등	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등급 (다소		
		급 (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Ⅲ. 집합투자기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클래스 신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u>Class C-P</u>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u>Class C-P2,</u>		
	설에 따른	가입자에 한함)	<u>C-P2e 가입자에 한함</u> )		
	과세 내용	- <신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Class C-P1, C-P1e 가입		
	추가		자에 한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		
			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이 투 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		
			<u> </u>		

유리자산운용

	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
	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
	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
	<u>니다.</u>

<끝>.